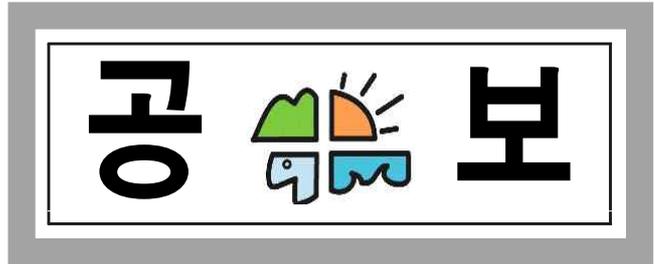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79호 2014년 8월 14일(목)

조 례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
-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규 칙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 속초시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9

공 고

- 청초호유원지 택지매각 입찰공고..... 18

회 람									
-----	--	--	--	--	--	--	--	--	--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374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를 “ 「지방자치법」 제112조 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사·물품·용역원가 분석 및 심사

제6조제11호 중 “제규정”을 “각종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반 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2. 본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9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 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계약

제13조제3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1조·제24조제1항·제27조·제30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제24조·제33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계약심사와 계약업무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상호 견제하는 측면에서 부적절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계과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375호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 12. 12. 시행)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376호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2호)란 다음에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동 장 인	1.9cm
○○동인증기전용3호	0.5cm

(2.4cm 정방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교동 · 노학민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인증기부착 전용공인을 신설하고자 함.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14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4조제38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제39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공사·물품·용역원가 분석 및 심사

제8조제15호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 중 “기타 물건”을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제9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0호 및 제40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54호 및 제13조제5호·제51호 중 “제증명”을 각각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14조제39호 중 “애로사항”을 “고충사항”으로 한다.

제17조제2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3호 중 “제반사업”을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21호 중 “유희시설물”을 “놀이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43호 중 “영림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해외”를 “국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제24조제45호 및 제26조제7호·제8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29조제23호 중 “비관리청”을 “관리청이 아닌자”로 한다.

제3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계약심사와 계약업무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상호 견제하는 측면에서 부적절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계과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속초시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15호

속초시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인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2호)란 다음에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3호)	동주무담당 (단, 교·노학·조양동은 행정민원담당, 교동·노학민원센터팀장)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교동 · 노학민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인증기부착 전용공인을 신설하고자 함.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16호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에 제목 “(출연금 등 처리방법)”을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출연금 등은”을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로, “세입예산”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표 1 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시금고의 경우에는
약정 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3.7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 중 일부 미비점 보완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		
- 원화유동성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1)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를 배점한도의 최대 5%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II.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1) 국외 평가기관 (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등급별 배점				비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의등급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2) 국내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등 급 별 배 점				비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의등급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 BIS 자기자본 비율(7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10%이상	9%이상~10%미만	8%이상~9%미만	7%이상~8%미만	7%미만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7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0.7%미만	0.7%이상~0.8%미만	0.8%이상~0.9%미만	0.9%이상~1%미만	1% 이상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3) 자기자본 이익율(6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20%이상	16%이상~20%미만	12%이상~16%미만	8%이상~12%미만	8% 미만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4)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1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150%이상	140%이상~150%미만	130%이상~140%미만	120%이상~130%미만	120% 미만	
1.0점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순으로 배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7점	5.4점	5.1점	4.8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0점	4.25점	4.0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85점	2.7점	2.55점	2.4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광고)일 현재 관내 점포수를 비교·평가하여 배점(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도 속초시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수납건수)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비교·평가하여 배점(전년도 수납 처리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3년내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간 처리실적)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 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 평가 배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7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8.0점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2점)

- 금고관리 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와 실적 및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평가 배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금융기관별 순위
배점

- 제안(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평가)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9점)

- 시 협력사업 및 지역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고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근거자료에 의거 비교·평가 후 배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 후 투자 금액에 따라 평가 후 배점(제안서 검토)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점	4.24점	4.0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청초호유원지 택지매각 입찰공고

속초시 소유 청초호유원지 내 택지(시유재산)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 「공영개발용지규정」 제95조, 제9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4.

속 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토지매각
- 나. 매각재산의 표시(총 8건) / 세부현황 붙임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예정가격(원)	비고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3	대	419.5	285,469,750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4	대	419.5	330,146,500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5	대	419.1	329,831,700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6	대	419.2	285,265,600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7	대	418.9	285,061,450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8	대	418.7	329,516,900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9	대	411.8	340,352,700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1-10	대	400.9	286,443,050	

2.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구분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1회	8. 18(월) 10:00 ~ 8. 28(목) 16:00	8. 29. 10:00	속초시청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2회	9. 01(월) 10:00 ~ 9. 11(목) 16:00	9. 12. 10:00	속초시청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 다. “온비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4. 입찰방법 :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예정가격 이상, 1인입찰유효)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가이드」 ⇒ 「온비드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기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본 입찰에는 대리입찰(공동입찰)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무효 처리됩니다.
 -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입찰연기 및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의 의할 수 있습니다.
-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가. 입찰자는 입찰시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전까지 온비드 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라.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및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전액 속초시로 세입 조치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개찰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 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 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를 통하여 게시되며, 낙찰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나. 입찰 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 또는 중대한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 다.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이 미 입금된 입찰

10. 계약체결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속초시에 귀속됩니다.
- 나. 구비서류
 - 개인 : 토지매입신청서(시의 소정양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 토지매입신청서(시의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지방세완납증명서
- 다. 계약체결 장소 : 속초시청 4층 건설과 도시개발팀(☎ 033-639-2055)
- 라.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마. 토지대금은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를 낙찰자가 택일하여 대금을 납부하며, 일시납부일 경우 계약시 10%, 계약체결후 2개월내 40%,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50%를 납부합니다.
 - ※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할 경우 선납기일만큼 지정금고의 1년만기 정기에금금리를 공제하여 납부
- 바. 분할납부일 경우 할부금은 매6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년내(계약금, 분할납부금 4회)완납합니다.
- 사. 계약자가 약정기일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합니다.
- 아. 계약자가 약정기일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월 이상 지연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총 매각금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속초시로 귀속됩니다.
- 자. 재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완납 후에 이전하며 매각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 전매·양도·저당권·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1.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중 최종 잔금을 우리시 금고에 납부하고, 시금고에서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12. 기 타

- 가. 본 입찰은 홈페이지(<http://www.sokcho.gangwon.kr>)에 게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공고하였으며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 상의 회원가입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공고문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 매각재산의 활용은 토지대장등본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고 행정상의 규제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및 타인점유 등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하자는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사전 현장답사와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및 건축행위 등 관련공부 등을 열람하신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지적공부와 불일치,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지장물(쓰레기, 폐기시설물)등 제거 및 명도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도면열람 및 현지확인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속초시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매각공고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낙찰일 전에 정정공고(게시공고)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전자입찰 집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바. 입찰과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 용어해석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사. 응찰자는 매각공고,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 결과로 발생한 책임을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한 요건미비로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13.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가. 온비드 이용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나. 입찰 및 제출서류에 관한 문의사항 : 속초시청 건설과 도시개발팀 ☎033-639-2055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 팩 스 : ☎639-2485

붙임 매각대상토지 세부현황 1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건축 면적 (m ²)	건축 연면적 (m ²)	층수	용도	예정가격 (원)	비고
토지	조양동	1551-3	대	419.5	210	1,050	5층	편의시설	285,469,750	
토지	조양동	1551-4	대	419.5	210	840	4층	편의시설	330,146,500	
토지	조양동	1551-5	대	419.1	210	840	4층	편의시설	329,831,700	
토지	조양동	1551-6	대	419.2	210	1,050	5층	편의시설	285,265,600	
토지	조양동	1551-7	대	418.9	209	1,045	5층	편의시설	285,061,450	
토지	조양동	1551-8	대	418.7	209	836	4층	편의시설	329,516,900	
토지	조양동	1551-9	대	411.8	206	824	4층	편의시설	340,352,700	
토지	조양동	1551-10	대	400.9	200	1,000	5층	편의시설	286,443,050	

※ 입찰자는 입찰전 사전 현장답사와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및 건축행위 등
관련공부 등을 열람하신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